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 안 번 호	7882

제안연월일 : 2007. 11. 22.
제 안 자 : 국회운영위원장

제안이유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대통령 임기개시 전에 국무위원후보자를 지명하여 국회의장에게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에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공직후보자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위원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추가함(안 제2조제1호).

나.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봄(안 제11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사청문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대통령”을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으로 한다.

제6조제3항중 “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을 “검찰총장ㆍ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로, “대통령”을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으로, “10일의 범위 이내”를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를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을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단서중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로 한다.

제11조제2항중 “대통령”을 각각 “대통령ㆍ대통령당선인”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본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직후보자”라 함은 국회법 제4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을 위하여 동의 요청된 자,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 대통령당선인으로부터 국무총리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와 동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에서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으로부터 국회에 인사청문이 요청된 자를 말한다. 2. (생 략)	제2조(정의) ----------. 1. ---------- 대통령·대통령당선인 ----------. 2. (현행과 같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② (생 략) ③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①·② (생 략) ③----------

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국가정보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 또는 경찰청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10일의 범위 이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검찰총장·경찰청장 또는 합동참모의장(이하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이라 한다)의 후보자---------- 대통령·대통령당선인------ 제2항에 따른 기간의 다음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국회가 송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을 임명 또는 지명할 수 있다.	④----------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에 ---------- 헌법재판소재판관등으로 ----------.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이 회부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① ----------

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치되, 인사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그 기간 이내에 마치지 못하여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이 정하여진 때에는 그 연장된 기간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 헌법재판소재판관등의 후보자 ----------.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생 략)	제11조(위원장의 보고 등) ① (현행과 같음)
②의장은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지체없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청문을 마친 후 폐회 또는 휴회 그 밖의 부득	②---------- 대통령·대통령당선인----------

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인사청문경과를 본회의에 보고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은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대통령·대통령당선인 ----------.
<신 설>	제11조의2(대통령당선인의 행위에 대한 의제) 「대통령직인수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대통령당선인이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요청한 후 대통령 임기가 개시된 때에는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청문과 관련하여 행한 행위는 대통령이 행한 행위로 본다.